

##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  
번  
호

110

제출년월일 : 1996.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□ 제안이유

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를 상위법령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 '96. 2. 13.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위원의 직명을 정비하여 도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

### □ 주요골자

-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시건설종합계획(안) 심의를 추가
  - 상위법령인 국토건설종합계획법이 개정되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시건설 종합계획(안)을 도심의회 심의후 승인토록 규정함에 따라 금회 도조례를 정비
- 도 직제개편으로 변경된 위원의 직명 정비
  - 부지사를 '행정부지사'로
  - 지역경제국장을 '공업경제국장'으로
  - 건설도시국장을 '건설교통국장'으로
  - 종전의 간사(지역계획과장) 및 서기(지역계획과 지역계획계장)을 '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장' 및 '업무주관 계장'으로 각각 정비

### □ 근거법령

-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3조(국토계획의 구분) 및 같은법 제18조(시·군계획)

### □ 기타참고자료 (붙임)

1.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증개정조례(안) 1부.
2. 신·구조문대조표 1부.
3. 관계법령 발췌문 1부.

## 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항 단서중 '군계획을 심의할 경우에는 관계 군수는' 을 '시(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한다)·군건설종합계획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·군수는'으로 한다.

제2조 제3항 본문중 '부지사, 기획관리실장, 지역경제국장 및 건설도시국장' 을 '행정부 지사, 기획관리실장, 공업경제국장 및 건설교통국장'으로 한다.

제3조 제2항 및 동조 제3항 본문중 '부지사' 를 '행정부지사'로 한다.

제4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시(도농복합형태의 시에 한한다)·군 건설종합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

제7조의2 제2항 본문중 '건설도시국장' 을 '건설교통국장'으로 한다.

제10조 제2항 본문중 '간사는 지역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역계획과 지역계획계장이 된다' 를 '간사는 심의회 운영을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주관계장이 된다'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